

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 번호	접수 일시	발급 일시	처리 기간	즉시
소유자	성명(명칭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(전화번호:)	
자동차	등록번호			
	차종		용도	
재발급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앞번호판 <input type="checkbox"/> 뒤번호판 <input type="checkbox"/> 앞·뒤번호판			
재발급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훼손 <input type="checkbox"/> 갱신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(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2. 자동차등록증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	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가 정하는 금액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)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
-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4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